#### 7. 별첨 - 장곡중 사회적협동조합 정관

제정' 16. 08. 26

개정' 18, 04, 12

#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 운영 규정

## 제1장 총칙

#### 제 1조(명칭)

학교협동조합의 명칭은 '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장곡중학교 분사무소' (이하 '학교 협동조합'이라 한다) 이라 한다.

### 제 2조(목적)

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의 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독립적 운영체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법인 학교협동조합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협력적 보완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.

#### 제 3조(사업내용)

학교협동조합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며, 법인과 협력 및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- 1. 교육공동체 복지증진 사업
- 2. 민주시민교육 사업
- 3. 건강증진사업
- 4. 교육 및 교육지원사업(방과후 돌봄, 온라인교육, 경비용역업 등)

또한,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사업으로 할 수 있다.

- 1.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,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
- 2. 조합 간 연계•협력을 위한 사업
- 3.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공헌 사업
- 4.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지원 사업
- 5.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구용역

### 제 4조(소재지 및 학교협동조합 설치)

① 학교협동조합의 사업장은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구성원의 학교 내에 둔다.

## 제 2장 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와 학교협동조합 이사회

### 제 5조(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)

- ① 학교협동조합은 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를 둔다.
- ② 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.
- ③ 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는 학교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구성하며,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가 그 의장이 된다.

제 6조(학교협동조합 정기 조합원회)

학교협동조합 정기 조합원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가 소집하다.

## 제 7조(학교협동조합 임시 조합원회)

- ① 임시 조합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가 소집한다.
  - 1)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 및 학교협동조합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) 학교협동조합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
- 3) 학교협동조합의 감사가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에게 소 집을 청구한 때
- ②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 또는 학교협동조합 이사회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# 제 8조(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 소집절차)

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 또는 학교협동조합 이사회는 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 개최 7일 전까지회의목적,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휴대전화 문자 또는 학교 내 공지 등으로 학교협동조합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 9조(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 의결사항)

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, 의결 내용은 법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학교협동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2. 학교협동조합 이사의 선출과 해임
- 3. 학교협동조합 결산보고서
- 4. 학교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(법인과 사전 논의 필요)
- 5. 기타 요구되는 사항(대의원 추천, 조합원 명부 등)

#### 제 10조(학교협동조합 구성)

1.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이사회를 둔다.

2. 학교협동조합 이사회는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와 학교협동조합 이사로 구성한다.

## 제 11조(학교협동조합 이사회의 소집)

- 1. 학교협동조합 이사회는 정기학교협동조합 이사회 및 임시학교협동조합 이사회로 구분하며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가 소집한다.
- 2. 정기 학교협동조합 이사회는 분기별 1회 매달 소집할 수 있으며, 임시 학교협 동조합 이사회는 학교협동조합 이사대표 또는 학교협동조합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  - 3. 학교협동조합 이사회는 자율성을 우선으로 한다.

#### 제 12조(학교협동조합 의결사항)

학교협동조합은 분기별 사업 실적을 확인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- 1. 운영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기본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
- 4. 결산보고서 작성
- 5. 기타 중요 사항

#### 제 13조(의결정족수)

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 및 학교협동조합 이사회는 조합원 및 재적 학교협동조합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 14조(회의록)

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 학교협동조합 이사회의 의사는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, 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는 의장과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, 학교협동조합 이사회는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와 출석한 학교협동조합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비치한다.

## 제 3장 학교협동조합 이사

#### 제 15조(학교협동조합 이사의 구성)

학교협동조합은 다음의 학교협동조합 이사를 둔다.

- 1.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 1인,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를 포함한 학교 협동조합 이사 10~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2. 학교협동조합은 학생,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하며, 주체들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구성한다.

#### 제 16조(학교협동조합 이사의 선임)

1.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, 학교협동조합 이사는 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- 2.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는 학교협동조합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3. 학교협동조합 이사 결원 발생시 학교협동조합 이사회에서 보선에 대하여 결정한다. 단 학교협동조합 이사의 수가 10명 미만일 때에는 결원이 발생할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### 제 17조(학교협동조합 이사의 해임)

학교협동조합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- 1. 이 학교협동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학교협동조합 이사 간의 분쟁,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- 3. 이 학교협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4. 법인이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학교협동조합 이사회를 해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.

#### 제 18조(학교협동조합 이사의 임기)

- 1. 학교협동조합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.
- 2.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.
- 3. 졸업하는 학생과 학부모 이사는 회계 기간동안 임기를 다한다.

## 제 19조(학교협동조합 이사의 직무)

- 1. 학교협동조합 이사는 법인의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- 2.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는 학교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학교협동조합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.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학교협동조합 이사회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학교협동조합 이사는 학교협동조합 이사회를 통하여 학교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학교협동조합 이사회 또는 학교협동조합 이사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## 제 4장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

#### 제 20조(분과위원회의 구성)

- 1. 학교협동조합의 교육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교육 활성화와 학생을 교육협동조합의 주체 적 역할로 세우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.
  - 2. 분과위원회는 학교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조직한다.
  - 3.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#### 제 21조(분과위원의 구성)

- 1.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구성인원은 학교협동조합 이사 의결로 정한다.
- 2. 분과위원은 학생 중심으로 구성하며, 조력자 역할로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인사 중에 1명씩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.

제 22조(분과위원회 활동)

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활동하며, 활도 시간은 위원회별로 정한다.

- 1. 분과위원의 선출 및 관리
- 2. 분과위원 활동에 관한 사항
- 3. 교육협동조합과 관련하여 학교협동조합 이사회에 의견 제시
- 4. 학교 내 자율 동아리 성격으로 분과위원회 활동
- 5. 기타 중요 사항

제 23조(분과위원회 기록)

분과위원회 활동의 기록은 위원회의 자율에 의하여 활동 자료를 기록, 수집하여 활용한다.

## 제 5장 재산과 회계

제 24조(재산의 구분)

학교협동조합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- 1. 기본재산은 학교협동조합 설립 시 법인에서 출연한 재산과 학교협동조합 이사회 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  -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 25조(기본재산의 처분)

학교협동조합의 기본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협동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26조(수입금)

- 1. 학교협동조합의 수입금은 제3조의 사업실시로 발생한 사업 수입, 정부·지자체 보조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- 2. 수익금은 목적사업에 재투하거나 사업확대,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 할 수 있다.

제 27조(수익금의 처리)

수익금은 조합운영과 목적사업,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재투자 한다.

- 1. 사업 확장, 시스템 구축 및 연구 개발 등 사업을 위한 재투자
- 2. 사회적 경제교육 활성화
- 3.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
- 4. 지역사회 공헌 사업
- 5.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립

제 28조(회계연도)

- 1. 학교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의 회계연도와 동일시 한다.
- 2. 학교협동조합은 이사장의 회계감사를 받는다.

### 제 29조(결산)

학교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전년도 학교협동조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에 보고하고, 정기총회 의결 이사회 운영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### 제 30조(사업계획과 수지예산)

1. 학교협동조합 이사회는 연도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학교협동조합 정기 조합원회 의결을 받아 법인에 제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.

## 제 6장 사무실 및 직위

## 제 31조(사무실)

- 1. 학교협동조합과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 사무실 요건을 갖추며, 운영을 위한 매니저를 둔다.
  - 2. 사무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협동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친 별도 규정에 따른다.

## 제 32조(종사자의 구성 및 임명)

종사자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하여는 학교협동조합 이사회와 법인에서 정한다.

## 제 7장 보칙

### 제 33조(운영규정 변경)

학교협동조합의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학교협동 조합 이사회 의결 및 100분의 30이상의 학교협동조합 운영교 이사회 동의와 함께 법인 이사 회에서 최종 의결한다.

#### 제 34조(규칙 등의 제정)

학교협동조합은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학교협동조합 이사회의 결의로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.

### 제 35조(해산 및 청산)

학교협동조합을 해산하거나 청산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협동조합 조합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며, 법인 이사회의 동의로 최종 의결한다.

#### 제 36조(잔여재산의 귀속)

학교협동조합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 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
제 37조(준용 규정)

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협동조합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

# 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201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위 장곡중학교 학교협동조합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학교협동조합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.